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1 (14 -18 July 2014)

No. IMO-0021-2014

BRIEFING STATUS
□ Flash
☑ Highlight
☐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Subject: News Highlight of III 1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제1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1)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4년 7월 14일에서 18 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Ⅲ 1차의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 니다. 참고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향후 MSC 또는 MEPC에서 채택 되어야 법적으로 발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항 무인 바지선의 MARPOL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

"해양환경으로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출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MARPOL 협약 적용의 필요성이 희박한 비자항 무인 바지선(UNSP: Unmanned and Non-Self-Propelled)에 대한 MARPOL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을 면제"에 대한 상세 내용 검토함

동 내용에 대한 지침(Guideline) 및 면제 후 발행되는 Statement(안)이 포함된 MEPC Circular 초안을 개발 검토하였으며 동 지침에는 UNSP에 대한 MARPOL 각 부속서별 면제 조건 및 면제 절차 등이 명시됨

MEPC Circular 초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MARPOL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음

- 1. MARPOL Annex I 또는,
- 2. MARPOL Annex IV 또는,
- 3. MARPOL Annex VI

동 MEPC Circular 초안에도 불구하고 MARPOL 협약에는 이러한 UNSP 에 대한 면제허용조항이 없기 때문에 MEPC 67 차에서 MARPOL 협약 개정 검토를 요청함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1 (14-18 July 2014)

☐ Flash

No. IMO-0021-2014

✓ High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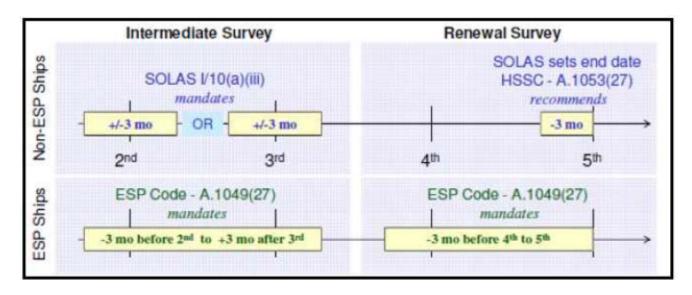
| Final

BRIEFING STATUS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2. ESP Code 비대상 선박의 화물선안전구조(SC)에 대한 중간 및 정기 검사 시기 변경

ESP Code 대상선박 및 비대상 선박의 SC 중간 및 정기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음



ESP Code 대상선박의 중간 및 정기검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ESP Code 대상선박의 특성과 연계할 이유가 없으며 ESP Code 비대상 선박 또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이에 따라 ESP Code 비대상 선박의 SC 중간 및 정기 검사시기를 ESP Code 대상선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

- 1. SOLAS 협약 개정안 ☞ 중간검사 시기 변경
- 2. HSSC Survey Guideline F 정기검사 시기 변경

3. BWM 협약관련 PSC 검사지침 개발

23 개국 정부, 5 개 정부간 조직 및 3 개 비정부 조직이 참가한 통신작업반 (Correspondence Group)에서 BWM 협약 관련 PSC 검사지침 초안을 개발함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1 (14 -18 July 2014)

No. IMO-0021-2014

BRIEFING STATUS
Flash
☑ Highlight
☐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현재 PSC 검사로 이용되고 있는 4 단계 검사방법(초기검사, 상세검사, 지표분석, 상세분석)으로의 접근방법, 시료 채취, 형식승인 및 지표분석 등은 개념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MEPC 67 에서 논의키로 합의함

그 외 Ⅲ에서 검토된 BWM 협약 관련 PSC 검사지침은, MEPC 결의서로 채택하기 위하여 MEPC 67 승인을 요청함

4. FRP 선박의 용골거치일에 대한 IACS 통일해석

많은 협약에서는 "용골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을 기준으로 협약요건을 적용하나 FRP 선박의 특성상, 용골거치일 또는 특정중량의 조립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FRP 선박의 "용골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IACS 에서는 FRP 선박의 용골거치일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FRP 선박의 몰드의 내부 또는 상부에 승인된 라미네이트 스케줄의 전체 두께로 첫 번째 구조적 적층이 이루어진 날짜"를 용골거치일로 보는 IACS 통일해석(UI, Unified Interpretation)을 개발하였으며, III 는 IACS UI 에 동의하고 동 내용으로 MSC-MEPC.5 Circular 초안을 승인함

5. HSSC 검사 지침의 "출항 정지 항목"에 대한 정의 및 기타 발견사항에 대한 조치

HSSC 검사 지침 및 관련 협약에 따라 "선박의 상태 또는 그 장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corrective action)가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증서를 취소하고 항만국은 출항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1 (14 -18 July 2014)

No. IMO-0021-2014

BRIEFING STATUS	3
□ Flash	
☑ Highlight	
☐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그러나 "선박의 상태 또는 그 장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 또는 그 장비가 증서 내용과 상당 부분 상이하거나, 선박, 승선인원 또는 환경으로의 위험 없이 항해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함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출항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요결함사항만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출항정지 항목 이외의 발견사항(minor findings)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통신작업반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함 <끝>

P.I.C:

Park Ji-hyun / Deputy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29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